

고성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의안번호 제1217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0. 3. 23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10. 3. 23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10. 3. 31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개정이유

- 상위 법령의 법명 변경으로 인함

3. 주요내용

- 「농업·농촌 기본법」 →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(안 제2조 제1항, 제2항, 제3항)

4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
- 고성군 공고 제2009 - 864호(2009. 11. 24 ~ 2009. 12. 14)
- 의견제출사항
○ 관계법령 및 근거
-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“농업·농촌기본법” 이 “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” 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일부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, 2009년 11월 24일부터 12월 같은 해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는데도 이번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○ 2010. 3. 3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